

노동자연대의 몇 가지 문제를 직면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울인 노력에 관한 보고서

1. 들어가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차제연으로 메일이 한 통 오면서 노동자연대의 문제와 관련된 고민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8년 6월 소속단체 중 하나인 페미당당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차제연이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차제연은 노동자연대가 보이는 문제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가치에 반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동자연대도 포함된 집행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준비를 이어가던 중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탈퇴했다.

노동자연대의 탈퇴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속한 단체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목표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연대체가 함께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노동자연대를 '2차가해 단체'로 규정짓고 비난, 배척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연대를 향한 문제제기가 음해와 공개적 중상이었다며 제기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일련의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남기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작성되었다.

첫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목표 및 가치에 반하는 노동자연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차별에 저항하고 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의 언어로 정리한다.

둘째, '연대체'의 소속단체가 연대체의 목표 및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지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다.

셋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른 연대체들과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고민을 확장하고 다른 가능성을 모색한다.

노동자연대의 문제를 직면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울인 노력은 그에 걸맞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또 다른 변화의 씨앗으로 남기를 바란다.

2. 노동자연대, 무엇이 문제였나

1) '원 사건'

1-1) A 사건

2011년, 한 대학의 동아리 수련회에서 남성 ㅎ가 여성 ㄱ에게 “야한 동영상”¹⁾을 보여주었으며 같은 자리에는 또 다른 남성 ㅍ이 있었다. 당시 ㄱ과 ㅍ은 노동자연대 회원이었고 ㅎ은

1) “야한 동영상”이라는 표현은 노동자연대가 A사건을 설명할 때 흔히 쓰는 표현으로 사건의 의미를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법정에서는 ‘음란 동영상’으로 표현되었다.

노동자연대 회원이 아니었다. 1년 후 여성 ㄱ은 자신이 원치 않는 동영상을 보아야 했다며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시도했다. 여러 단체들은 이 사건을 ‘노동자연대 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이라 불렀으며, 노동자연대는 “노동자연대와 무관하며,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1-2) B 사건

2016년,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토론회에서 여성 ㄴ이 운동 초기 성폭력 당한 경험을 언급하는 청중 발언²⁾을 했다. 노동자연대는 여성 ㄴ이 언급한 사건이 노동자연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추정하고 여성 ㄴ에게 조사를 요구하였다. ㄴ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하지 않았다. 이후 ㄴ은 자신의 발언을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가해자에 의해 작성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노동자연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폭력 사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ㄴ이 노동자연대를 비난하기 위해 사건을 공론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3) ‘원 사건’에 대한 본 보고서의 접근

ㄱ과 ㄴ은 모두 ‘원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자연대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연대는 A사건의 경우 성폭력 사건이 아니고 노동자연대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B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폭력 사건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다루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두 부당한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즉 ‘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다른 의도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가해단체 및 2차 가해단체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원 사건’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원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해석하는 피해 여성의 말하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자연대처럼 ‘원 사건’이 성폭력 사건인지 의문을 제기할 때 그것에 대한 토론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원 사건’이 성폭력 사건인지 토론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다. ‘원 사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호소하는 말하기를 어떻게 들어야 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떤 태도로 풀어가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노동자연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조직에는 성폭력 사건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논리를 조직적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또한 2차 피해는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원 사건’과 연관되어있지만 그것의 성폭력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여성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언행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사건의 진위도 비로소 철저히 밝혀질 수 있다.

2) “그런데 발제자도 말씀하셨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동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저 스스로 보고 느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엄청난 혼란과 배신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 특히나 고약했던 건, 운동 신입이고 소위 조무래기에 불과한 저 자신과, 상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동지, 이런 구도 속에서 제 경험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동지를 잃는 것, 괜히 조직을 흠집 내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스스로 들었고, 결국은 말하지 못했고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내가 왜 택시를 같이 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한 성질하는 여성조차 심지어 운동사회 내에서 이런 일을 겪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슬픈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이, <강제적 성폭력 공론화와 잔인한 괴롭힘을 당장 중단하라>(2017.9.30.)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토론회(2016.2.29.) 당시 발언 전문 중 재인용

2) 노동자연대가 보인 문제³⁾

2-1) 사회적 편견에 편승하며 차별을 재생산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회적 편견을 악용한다. 노동자연대는 A 사건의 문제제기자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자살 시도”, “우울증”, “경계선 인격 장애” 등 병력을 폭로하거나 “연애 결별의 양가됨”이라는 주장 등을 하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⁴⁾. 2017년 5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체 전체에 메일로 보내고 노동자연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회의는 좌파 노동단체의 배제를 중단해야한다>글에서는, A사건의 문제제기자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노동자연대가 문제제기자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제기 자체에 대해 반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문제제기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 문제제기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차별이나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자주 부딪치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또한 문제제기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에 기대는 것은 차별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낳는다.

2-2) ‘피해자다움’을 강요

노동자연대는 피해생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하며⁵⁾ 그의 해석과 느낌을 부정하려 든다. ‘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할 만한 행동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 ‘피해자다움’이란 피해자는 전적으로 ‘순결’, ‘순수’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피해경험에 대해 보상을 거론하면 안 되고, 피해경험 당시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야 하며, 피해경험에 대해 일관적으로 판단하고 진술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를 향한 기대와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피해자가 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경험은 쉽게 축소·부정 당한다. 그렇기에 특정한 피해자상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사건/사고를 인권침해적 폭력피해로 재해석하고 공론화하는 피해자의 존재와 그들의 용기를 짓밟는다.

3) 본 보고서는 노동자연대 명의로 생산하고 배포/유통해온 글을 바탕으로 노동자연대가 보인 문제를 짚어갈 것이다. 이 중 일부는 현재 노동자연대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도 했으나 삭제 전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주장들이다. 이하 모든 각주는 노동자연대 명의로 작성된 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4) ““자살 시도”, “우울증”, “연애 결별의 양가됨” 언급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들춰내기’나 ‘인신공격’이라는 주장도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 사실들은 사건과 무관하기는커녕 진상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적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 A지지도임 성원들 사이에서 A가 “경계선 인격[성격] 장애”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의학정보 사전을 보면 경계선 성격 장애는... (경계선 성격 장애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이 글에 붙인 부록을 보라.)”<공허한 수사로 정치적 파산을 은폐할 수 없다.>(2015.01.16.)

5) “3) A는 “성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하리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A는 ‘동영상 사건’ 직후인 2011년 7월 말에도 정아무와 거리를 두기는커녕 정아무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던 A는 정아무에게 앙심을 품는 것으로 돌아섰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증거들이 매우 많다. 대책위가 요청하면 이 증거를 기꺼이 제공할 것이다.... 요컨대, A는 온라인 폭로 전에는 정아무를 전혀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다가 나중에 갑자기 가해자로 지목했고, 이 때문에 ‘동영상 사건’에서의 정아무의 역할에 대한 A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다.“<”다 함께 성폭력 사건“은 불순한 의도로 재구성된 사건>(2014.12.19.)

마찬가지로 '성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이 할 법한 행동'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기대하고 그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한 피해자를 '피해자답지 못하다'며 비난하는 행동은 전형적인 성폭력사건 축소하기일 뿐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실 관계를 ' 좋게 ' 확인하는 등 현 사회의 편협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다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로 이러한 태도를 근거 삼는 이와 같은 태도는 성폭력에 대한 물이해를 반영할 뿐 아니라 잘못된 성폭력 피해자상을 강화·재생산하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현 사회의 가부장적 성폭력 통념과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노동자연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피해 주장에 '다른 의도'를 덧씌운다⁶⁾. 노동자연대는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해치기 위한 '이간질'로 A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규정함으로써 문제제기자의 해석과 느낌을 부정하고 침묵을 강요한다. 이는 피해를 호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단결의 논리로 침묵을 강요하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조직보위 논리,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말할 때 불신하고 부정되는 문화에서 비롯되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겪는 성차별적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2-3) 피해자에게 입증책임 전가

노동자연대는 B사건 문제제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상조사에 응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⁷⁾. 그러나 노동자연대가 사건을 조사하려는 이유가 문제제기자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조직이 “성폭력 절대 불관용 원칙”을 가진 조직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문제제기자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기 전까지는 성폭력 사건이 없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때 또는 다른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할 때, 단체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원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누가 가해자인지 뒤져서 찾아내”지 않더라도- 원 사건의 배경이 되는 조직적 문제를 점검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어떻게 말할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진상규명을 '당연히' 요구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는 피해자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진상조사든 공론화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위한 진상규명/조사가 아닌 노동자연대를 위한 진상규명/조사를 추구한다. 성폭력은 성폭력 가해자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지 않고 성폭력이 가능한 권력 관계와 이러한 권력을 강화하고 방임하는

6)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속에서 좌파가 노동자 운동의 단결을 이끌고 조직해야 할 때, 이런 근거 없는 왜곡으로 좌파 단체들을 이간질 하고 노동자 연대의 연대 활동 자체를 흠집내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 자제해야 한다.” <“성폭력가해단체”라는 명예훼손 모략을 중단하라>(2014.11.26.)

“1분짜리 동영상 보고 느낀 자신의 불쾌감이 착취받고 천대받는 수십만 노동자들의 조건과 저항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밖에 안되는 거지요.” <다함께 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의 ‘노동자연대 대학문화 성폭력사건 10문10답’에 대한 노동자연대 측의 반박>(2015.01.01.)

7) “우연히 J의 발언을 현장에서 듣고 깜짝 놀란 노동자연대 분쟁위원(여성)은 가해자를 찾아내어 징계해야 한다고 단체에 보고했습니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위는 누가 가해자인지 뒤져서 찾아내기 위한 내사에 은밀히 착수했습니다. J의 노동자연대 혐오나 증오와 관계 없이 가해자는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런 조처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성 해방이라는 원칙(“우리의 기본 입장”에 요약된)과 성폭력 절대 불관용이라는 규율을 강조해 왔습니다. “<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2차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2018.06.22.)

사회문화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폭력이 가능했던 문화에 대한 성찰과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절대 불관용 원칙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추방하고 노동자연대와 성폭력을 연결시키는 것은 비방일 뿐이라는 답변으로 문제제기에 응수한다.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그 해결 방식도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두 정치적 음해로 차단함으로써 폭력이 가능한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한다.

2-4) 연대체 내 상호 토론 불가능하게 만들

노동자연대를 향한 문제제기는 모두 비방에 불과하다는 노동자연대의 태도는 연대체 내 상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소속단체들 중 일부는 2017년 8월, 노동자연대의 이와 같은 행동이 반성폭력 운동의 기초를 훼손하는 문제적인 행동임을 지적하고 변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다른 연대단위들의 비판을 노동자연대에 대한 ‘비방’이라거나 ‘낙인찍기’라고 대응하거나, 특정 개인의 발언을 다른 단위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설파한다⁸⁾. 이에 근거해 노동자연대는 연대단체들의 비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거나 억울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직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연대체 내에서 연대 단위들이 상호 비판적이고 참조적인 관계를 통해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어떤 단체 혹은 개인도 성폭력을 비롯한 현 사회의 차별·폭력과 무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우리는 내부 문화와 구조를 성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한다. 노동자연대는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단체를 종파적이라 규정하며 문제제기를 차단해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치적 견해 차이나 종파적 이유로 노동자연대의 인권침해적·폭력적 행위를 문제 삼는 바가 아니다. 노동자연대가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여 이를 꾸준히 재생산해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두 부정하기로만 일관하고 성찰/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8)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토록 비상식적인 배제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최근 일부성소수자 단체들이 제국주의 기구인 미 대사나 다국적기업의 후원을 받고 자본주의 사회의 최상층에 속하는 인사들과도 거리낌없이 동맹을 맺는 우경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우경적 정치에 기반한 ‘주류화 전략’을 노동자연대가 비판해 왔다. 바로 이것이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로 두루 여겨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회의는 좌파 노동단체의 배제를 중단해야 한다>(2017.5.31.)

“그런데도 연서명 발의 단체들은 (그들 자신이 차제연 소속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차제연이 오랜 고심과 민주적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각된 안건을 사실상 재차 제기하며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서명 발의 단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반차별 운동에 어떤 역효과를 낼지도 돌아봐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냉담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반차별 운동의 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와 무관한 사안으로 연대체 내에서 좌파 단체 추방을 시도하며 쓰디쓴 반목을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연대체의 목적과 무관한 특정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소속 단체를 쫓아내는 것은 반차별운동의 대의와 무관하고 오히려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아 운동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동료 단체를 비방해선 안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서로의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도 차별에 맞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운동을 진정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노동자연대는 앞으로도 차제연 활동에 능동적 일부로 참가하며 차별반대 운동의 전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운동 내 토론과 연대를 가로막는 종파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운동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 일부 단체의 노동자연대 낙인 찍기와 추방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2017.08.25.)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노동자연대의 문제와 관련해 차제연에서 이루어진 노력들은 징계와 퇴출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논의 절차와 방식을 고민하는 것, 차제연의 성찰과 변화 과정으로서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 높은 감수성으로 차제연 내부를 돌아보며 운동의 가치를 체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은 과정 내내 주요한 고민들이었다. 이런 진지한 고민들은 노동자연대와의 상호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차제연 소속구성원들은 소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노동자연대의 변화를 촉구하고 차제연 내부를 검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1) '원칙과 절차' 안 마련

노동자연대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메일이 2017년 5월 8일 차제연 공식메일로 도착했다. 차제연 공집장단은 이 요청에 대한 논의방식과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집행위회의와 전체회의에 참여절차에 대한 안건을 제안한다. 노동자연대는 해당 안건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공집장단 회의에 참석을 요구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자 '참여재고 문제제기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집장단이 노동자연대를 논의에서 배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논의방식과 절차를 고민한 것은 연대단체 안에서 소속단체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위험성에 대한 긴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개별 소속단체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가장 차별에 민감해야 할 차제연이 피해를 호소하는 이의 사정을 살피고, 어떤 불이익과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차제연 소속단체들은 두 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했다.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주장과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연대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원칙과 절차>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 것은 '차제연의 목표와 활동에 반하거나 해가 되는 활동'의 의미를 폭넓게 차제연 스스로 생각하고 자정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었다. 가입, 탈퇴의 문제가 아니라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감수성을 높이는 과정은 원칙이 아니라 상호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절차안 마련과정은 적격 단체에 대한 징계나 자격 제한 등으로 논의를 가두지 않고 논의 과정을 통해 차제연이 연대체의 목표를 체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2) 32개 단체의 입장 개진과 노동자연대의 반박

소속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연대체가 입장을 정하기 전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칙과 절차' 논의와 별개로 노동자연대에 문제의식을 전하고 변화를 요청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단체들이 있었다.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안에 접근하는 관점과 해결원칙을 세우는 과정을 거치며 노동자연대 스스로 소속단체들의 의견을 듣기를

바랐다. 안타깝게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임을 호소하는 이와 책임있게 논의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

2017년 8월 소속단체 중 32개 단체들은 노동자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점이나 판단의 차이, 2차 가해 개념의 곤란함이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 사실관계의 부정확함이나 왜곡 등의 문제로 설정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에 대한 비방과 공격을 멈추고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절차안 마련으로 상황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차제연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남길 수 있었다.

성명은 절차안 마련 후 노동자연대 참여재고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 상황이 피해자의 고통이나 문제제기를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연대가 관련 논의 과정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노연이 피해를 호소하는 이에 대한 공격은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반박 성명을 내며 제기된 문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⁹⁾. 소통에는 실패했지만 원 사건에 대한 공방에 집중하는 노동자연대에 쟁점과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내고 노동자연대의 구체적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전체회의 논의 준비

2018년 5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새로운 피해를 호소하는 2으로부터 노동자연대에 의한 피해와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호소 메일을 받게 되었다. 한편, 차제연 소속단체였던 페미당당은 “노동자연대의 성찰과 변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차제연 활동을 함께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탈퇴하였다¹⁰⁾.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차제연 소속 6개 단체(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한국다양성연구소, 다산인권센터,

9) “(피해를 호소하는)A가 차제연에 메일을 보내 노동자연대를 쫓아내라고 요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A의 제기는 기각됐다. 차제연 내에서 무려 두 달 반의 논의를 거쳐 A의 요구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차제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인 연대체이기에 그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차제연 소속단체들이 시시비비를 가려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합당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연서명 발의 단체들은 (그들 자신이 차제연 소속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차제연이 오랜 고심과 민주적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각된 안건을 사실상 재차 제기하며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연서명 발의 단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반차별 운동에 어떤 역효과를 낼지도 돌아봐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냉담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반차별 운동의 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와 무관한 사안으로 연대체 내에서 좌파 단체 추방을 시도하며 쓰디쓴 반목을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 일부 단체의 노동자연대 낙인 찍기와 추방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2017.8.25.)

10) (페미당당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차제연 소속 단체 여러분, 페미당당입니다. / 페미당당은 차제연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속 단체들에 인사드리고 텔레그램 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논의 이후 페미당당을 포함한 차제연 소속 34개 단체는 2017년 8월경 노동자연대의 2차 가해 중단 및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없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노동자연대와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현재까지도 노동자연대의 성찰과 변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차제연 내부에서 다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재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이상적인 방향이겠습니다만, 저희 단체의 현재 여력 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차제연 활동을 함께 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동안 차제연 내부에서 해당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단체들에 감사드립니다. 페미당당은 지금은 연대체를 떠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여정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 2018.5.23. 페미당당 드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노동자연대의 행위가 차제연의 지향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아래의 문제제기와 함께 안전상정을 요청한다.

①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비난/비방하는 움직임이 지속하였으며, 2017년 공동성명 이후에도 어떠한 변화나 성찰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음.

② 차제연에서 관련된 토론이 진행될 때 노동자연대는 다른 단체들이 전하는 우려와 비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노동자연대는 자신이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데 성폭력 가해 단체로 지목당했다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것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과 태도의 문제임.

③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사건과 그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처하는 일련의 모습이 원 사건과 관련된 2차 피해 유발을 넘어 성폭력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당사자들에게도 큰 위협과 공포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다른 생존자들의 피해 호소와 "말하기"를 위축시키고 있음. 노동자연대가 일련의 과정에서 발표하는 입장들은 여성으로서의 말하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자체로 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임.

④ 노동자연대는 몇몇 여성을 상대로 괴롭힘과 인신공격을 지속하고 있음. 그 여성들이 자신의 조직을 비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직이 비방당한다고 해서 개인을 짓밟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님. 문제제기한 여성의 성폭력 피해사실이나 병력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문제제기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임.

⑤ 노동자연대는 해당 사건들에서 노동자연대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함.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운동 조직으로서 부적절한 모습.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집행위 회의에서 노동자연대는 ‘L의 글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입장과 해결 방안 논의의 건’ 상정을 요청했다. 집행위 회의에서는 노동자연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전을 ‘페미당당 탈퇴 이후 전체회의 논의 요청 건에 관한 정리’에 앞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공집장단은 해당 안전을 제안하며 노동자연대가 작성한 입장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반복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입장문을 안전자료로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노동자연대는 차제연 담당자가 아닌 활동가들까지 5명이 참석하여 논의 자체가 부당하며 차제연이 원 사건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날 집행위 회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진상조사를 차제연이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하였고, 2017년 마련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노동자연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루기로 했다.

노동자연대가 차제연 활동의 목적에 반한다는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과정은 노동자연대를 비방하거나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체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연대는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연대가 충분히 입장을 밝힐 기회를 보장하려는 여러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연대는 차제연을 탈퇴했다.

4.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1) 개별 단체가 낼 수 있는 여력의 한계

차제연은 저마다 고유한 목표와 조직형식을 가지는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공통분모로 모인 단체들이, 소속단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입장을 가져야 할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일률적으로 서로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 이는 대부분의 연대체가 놓인 조건이기도 하다.

노동자연대의 문제가 차제연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속단체마다 노동자연대의 문제를 접한 시기나 내용이 달랐다. 오래 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사건/상황의 흐름을 쫓아가던 단체가 있는가 하면, 노동자연대가 2017년 5월 공집장회의에 문제제기하는 메일을 소속단체들 모두에 보내면서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한 단체들도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주장이 경합할 때 모든 주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개별 단체가 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자연대는 '원 사건'이 성폭력이 사건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어떤 문제 제기도 잘못됐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질문이나 의견 개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원 사건'의 사실과 후속 경과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부담은 '원 사건'과 무관하게 노동자연대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조차 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노동자연대가 '야한 동영상 보여줬을 뿐'이라며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속단체들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속단체 중 일부가 '원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을 때 노동자연대는 해당 단체들을 집요하게 압박했다. 노동자연대는 전화로 항의하거나 메일을 통해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사전에 약속 없이 여러 명의 활동가가 일방적으로 단체 사무실을 찾아와 면담을 독촉하는 등 피해자를 지지/지원하는 활동을 위촉시켰다. 이러한 일을 겪은 단체들은 '괴롭힘' 또는 '공격'을 당한다고 호소하기도 할 정도로 위협적인 행동이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연대의 태도는 여러 단체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는 것을 피하고 싶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의 문제제기'로 축소시키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차제연의 소속단체라는 이유로 모든 개별단체가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며 소속단체들에 이와 같은 책임을 모두 떠넘길 수도 없다. 동시에 다른 소속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연대체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우회할 수 없을 때 소속단체들이 어떻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여전히 고민으로 남는다.

2) 연대체가 소속단체의 문제를 인지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

차제연이 노동자연대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기된 문제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의의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개인의 진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을 악용하는 것은 차별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낳으며, 차별의 피해자들이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피해자다움'의 강요는 반차별운동의 성과를 거스르는 태도이기도 하다. 입증 책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오롯이 입증 책임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차제연은 이와 같은 문제를 다

루기 위해 '원칙과 절차'를 만들었다.

차제연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목적은 노동자연대를 문제 단체로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제연이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의미를 스스로 구현하는 연대체가 되기 위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노동자연대의 문제 자체'보다 '차제연에서 노동자연대가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운동사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논의는 '성원 자격'의 문제로 이해되기 쉽다. 가해자 개인을 지목하여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는 반차별운동이 늘 경계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문제의 해결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징계 논의로 환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변화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했다.

연대체의 목적에 반하거나 해를 입히는 소속단체의 문제가 있을 때 연대체나 다른 소속단체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연대체의 이름으로 소속단체에 어느 정도까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참조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노동자연대는 일관되게 '추방 시도'라고 규정하며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했다. 성원 자격 여부나 징계 논의로 흐르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노동자연대에 의해 오히려 가로막혔던 것이다. 노동자연대가 스스로 탈퇴하였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차제연은 어떤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지 과제로 남아 있다.

3) 문제를 제기당한 단체의 변화 가능성의 한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단체에나 쉽지 않은 일이다. 운동단체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운동이 부정당하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운동단체는 문제가 없는 단체가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절대 불관용 원칙'을 내세운다. 성폭력에 대한 불관용은 성폭력을 더욱 잘 알아차리고 여성주의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힘으로서 작용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없음'을 주장하는 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조직이 성폭력 불관용 원칙에 걸맞는 모습인 것처럼 자신을 규정했다. 이런 조직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외부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연대의 입장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연대는 다른 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자신의 조직에 대한 '비방'으로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조직이 비방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서는 반격은 정당하다'는 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공격했다. 또한 조직에 대한 비방이 회원 개개인 모두를 비방하는 것인 듯 말하면서 노동자연대 내부의 변화 가능성도 스스로 차단시켰다. 조직에 속한 개개인들도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오히려 조직이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자신의 프레임을 유포하는 데에만 조직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된 단체의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 변화 가능성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도 들이는 노력에 비해 남길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노동자연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던 차제연의 노력도 노동자연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차제연에 남은 변화의 가능성을 소중히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일지 고민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노동자연대의 몇 가지 문제를 직면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울인 노력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첫째, 연대체의 소속단위에 특정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확장하고 내부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다. 둘째, 단죄도 방임도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소속단체 간 적극적인 상호 토론을 이어나갔다. 셋째, 차별금지법제정에서 중요한 원칙들을 연대체의 활동 그 자체에도 녹이기 위한 실천을 함께 고민하고 발굴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개별 단체들이 젠더감수성을 포함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이 동반될 때 연대체의 노력이 힘을 얻게 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차제연의 노력은 개별 소속단체에서 해당 문제에 투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력의 한계, 연대체로서 취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식의 협소함, 노동자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한 소통의 부재라는 어려움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 차제연은 본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문제해결과정에서 남은 고민을 정리하고 나누고자 했다.

서로 조금씩 다른 정치와 지향을 갖지만 공통의 목표로 함께 하는 연대체에서 공통의 목표를 저해하거나 이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연대단위들은 어떤 과정을 밟아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노동자연대의 인권침해적 행동에 문제제기를 하며 연대단위들은 노동자연대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고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노동자연대와의 대화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노동자연대가 노동자연대를 향한 모든 문제제기를 근거 없는 비방 혹은 정치적 이간질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고민·성찰을 거부했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연대의 인권침해적 행보를 관망하거나 좌시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연대단위들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을 꿈꿨다.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간담회를 진행하고 서로의 문제의식을 나누었다. 다른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이를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내부 문화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운동단체로서의 일종의 윤리,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로서 의미 있었다.

남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모인 우리는 차별과 폭력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변화시키고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은 연대체 내부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노동자연대의 인권침해적 행동은 차별에 저항하는 연대체에서만 문제로 삼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적 행동인가? 다른 단체의 일이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처단과 처벌로 귀결되지도 않는 틈새 공간을 생성하기 위한 차제연의 이번 시도는 앞으로 어떤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질문을 품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반차별운동으로 연대하는 이유이며, 서로에게 긴장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이다.